

사법 절차 지원 교육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진솔조력인 장정은

목 차

1.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 지원 관련 제도
 - 1-1. 진술조력인 제도 소개
 - 1-2. 신뢰관계인 제도 소개
2. 의사소통 지원 실제
 - 2-1. 형사사법절차 이해 및 가족의 역할
 - 2-2.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초기 면담 방법

진술조력인	구분	신뢰관계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3. 6. 19.) 및 시행(2013.12.19.)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4. 9. 29.)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법령	* 형사소송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법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 후 법무부장관이 부여하는 진술조력인 자격 을 취득한 사람	자격	사건 당사자(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등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 피해자인 경우 변호사 및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술조력인 포함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 하여 심리적 안정, 의사소통 증개·보조	역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동석 하여 심리적 안정, 의사소통 도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범죄	모든 범죄
피해자 ※ 참고인, 증인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장애 의심 또는 기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13세 미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중립 의무, 비밀 보장 의무, 성실 의무	의무	-
사전평가 → 수사 및 재판, 의사소통 증개·보조 → 보고서	활동	수사 및 재판 동석

1-1. 진술조력인 제도 소개

■ 정의 및 역할

성폭력범죄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사전평가 → **의사소통 중개, 보조**)

진술자의 정서 및 행동, 진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인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부여하는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진술조력인으로서 수사 ·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1. 진술조력인 제도 소개

■ 지원 대상 범죄_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아동학대범죄로 분류된 사건

■ 지원 대상자_ 피해자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자는 성폭력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에 한한다.

현재 참고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2010. 10. 1.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2020. 3. 24. 개정),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①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②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의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4장 제17조

1-1. 진술조력인 제도 소개

■ 지원 대상자 ① _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및 아동학대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원 대상자 ② _ 장애인

성폭력 및 아동학대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 없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 대상자 ③ _ 장애 의심 또는 기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정서적 불안, 함묵증, 진술 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한 자

1-1. 진술조력인 제도 소개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시행 2022. 1. 28.]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1-1. 진술조력인 제도 소개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시행 2022. 1. 28]

제59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 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신뢰관계인 제도와 역할 이해

■ 신뢰관계인이란?

모든 범죄의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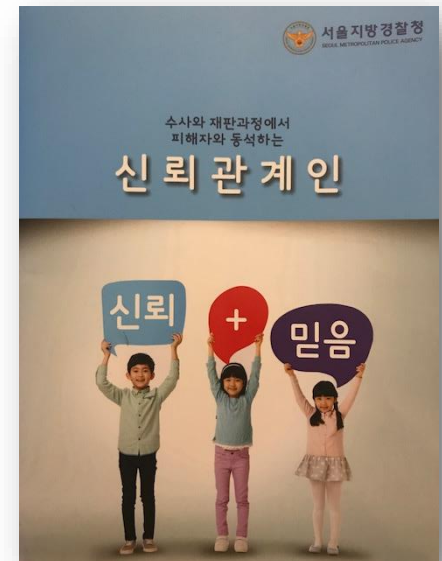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근거규정: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83조의3(법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21조(수사기관의 경우)〉



1-2. 신뢰관계인 제도와 역할 이해

■ 정의 및 역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석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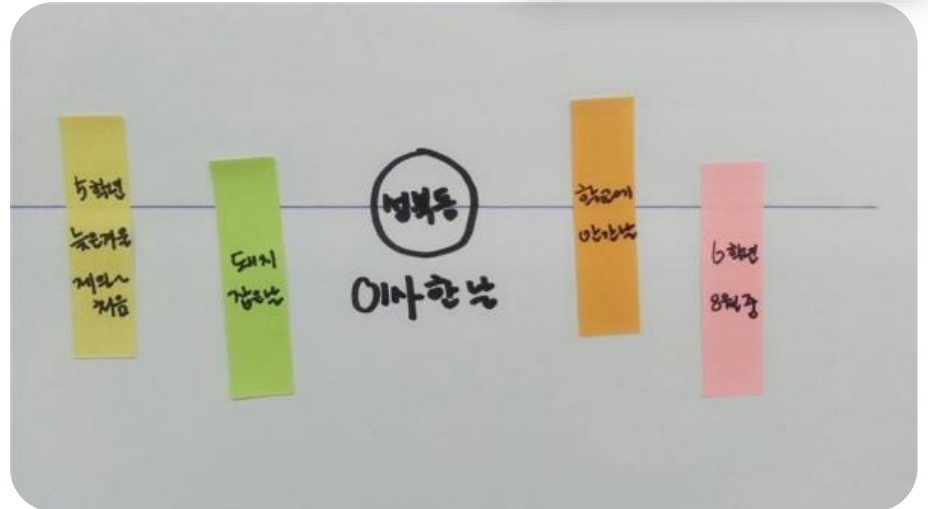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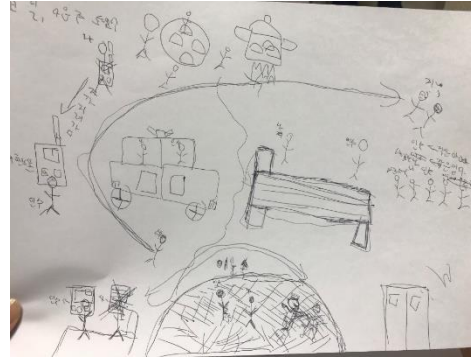
신뢰관계에 있는 자

■ 신뢰관계인으로서의 동석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피해자인 경우 변호사 및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술조력인도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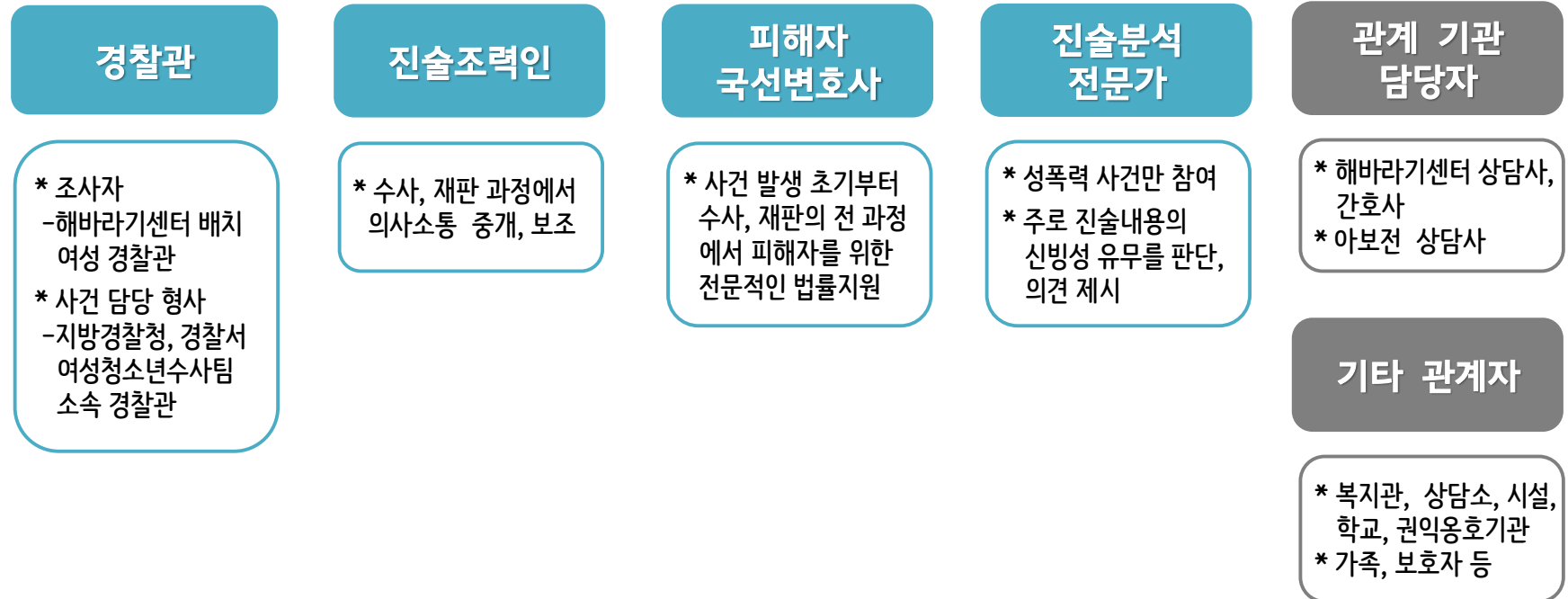
2-1. 형사사법 절차 이해



2-1. 형사사법 절차 이해 (성폭력피해, 아동학대피해 → 해바라기센터)



■ 수사(경찰) 단계 관련 전문인력



2-1. 형사사법 절차 이해 (그 밖에 피해, 그리고 → 경찰서, 검찰, 법원)



■ 수사(경찰) 단계 관련 전문인력



2-1. 형사사법 절차 이해 (성폭력피해, 아동학대피해 → 해바라기센터)



경찰관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타 관계자

진술분석
전문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2-1. 형사사법 절차 이해 (그 밖에 피해, 그리고 → 경찰서)



경찰관

피해자

신뢰관계인

기타 관계자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 * 초기 면담
 - 심리적 안정
 - 피해사실 확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폭행, 사기, 기타 위기지원)
 - 진술 능력

피해사실 확인 시 유의사항

- * 개방형 질문 + 자유진술
(진술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도질문 절대 금지.)
자유진술을 통해 풍부하게 들어주기)
- * 들은 정보를 꼼꼼하게 기록
(녹음 기록 시 피해자에게 녹음 사실을 알린 후,
안정된 환경에서 자유롭게 진술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김)

**# 최초 진술 내용이 법정까지 증거로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객관적, 중립적, 오염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 초기 면담
 -심리적 안정
 -**피해사실 확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폭행, 사기,
 기타)
 -진술 능력

폐쇄형 질문, 유도 질문과 진술 오염

- * 언제_ 날짜. 시기. 시간(전/후). 계절. 나이. 학년. 일상의 시간. 일화적 기억능력
- * 어디서_ 장소(공간). 뭐 할 때
- * 누가_ 가해자.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호칭. 성별. 연령. 외모. 초면/구면
- * 무엇을_ 피해 사실. 피해 횟수
- * 어떻게_ 구체적인 피해 사실. 피해 상황
- * 왜_ 피해가 반복된 이유 등 피해 사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유
- * 기타_ 목격자. CCTV 유무. 발고 경위. 출처 탐지 능력. 자기만의 표현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 * 초기 면담
 - 심리적 안정
 - 피해사실 확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폭행, 사기, 기타)
 - 진술 능력

- ### #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진술 능력
- * 언어 **이해** 능력: 질문 길이, 언어/어디서/어떻게/왜, 유도질문, 선택질문 등
 - * 언어 **표현** 능력: 질문에 대한 응답 패턴/반응시간, 이해불가 시 반응, 명료도 등
 - *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표정/손짓/몸짓/그리기/쓰기, 인형, 도구, 자발성 등
 - * **지남력**: 장소(공간), 사람, 시간(시계, 소요시간, 반복적인 일상의 시간 등)
 - * **기억 및 회상** 능력: 과거 경험 기억, 회상 정도, 자유회상 정도 등
 - * 기타 인지기능: 색깔, 수(기계적 수 세기, 경험의 횟수, 정확한 횟수, 간단한 셈 등)
 - * 기타 진술과 관련된 능력: **피암시성, 출처탐지, 자기만의 표현** 등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 초기 면담
 -심리적 안정
 -피해사실 확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폭행, 사기,
 기타)
 -진술 능력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진술 능력_ 자기만의 표현 (언어+비언어)

- * 언제_ 날짜. 시기. 시간(전/후). 계절. 나이. 학년. 일상의 시간. 일화적 기억능력
- * 어디서_ 장소(공간). 뭐 할 때
- * 누가_ 가해자.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호칭. 성별. 연령. 외모. 초면/구면
- * 무엇을_ 피해 사실. 피해 횟수
- * 어떻게_ 구체적인 피해 사실. 피해 상황
- * 기타_ 색깔. 숫자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 * 112
(지금 발생,
즉각 개입)
- * 해바라기센터
-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 * 1366
여성의 전화
- * SPO(스쿨 폴리스)
- * 기타

성폭력 피해 신고 시 유의사항

- * 증거 채취를 위해 목욕하거나 씻지 않고 속옷, 입던 옷 등을 따로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오기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 * 피해정보 제공
 - **최초 진술**
(초기 폭로 내용)
- * 피해자정보 제공
 - **장애 특성**
 - **진술능력**
(의사소통 수준)
 - **심리적 특성** 등
- * 필요 시,
신뢰관계인 동석
 - **심리적 안정**

신뢰관계인 참여

- * 누가 참여할 것인가?
: 신뢰관계인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가장 잘 알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가 중요!
- *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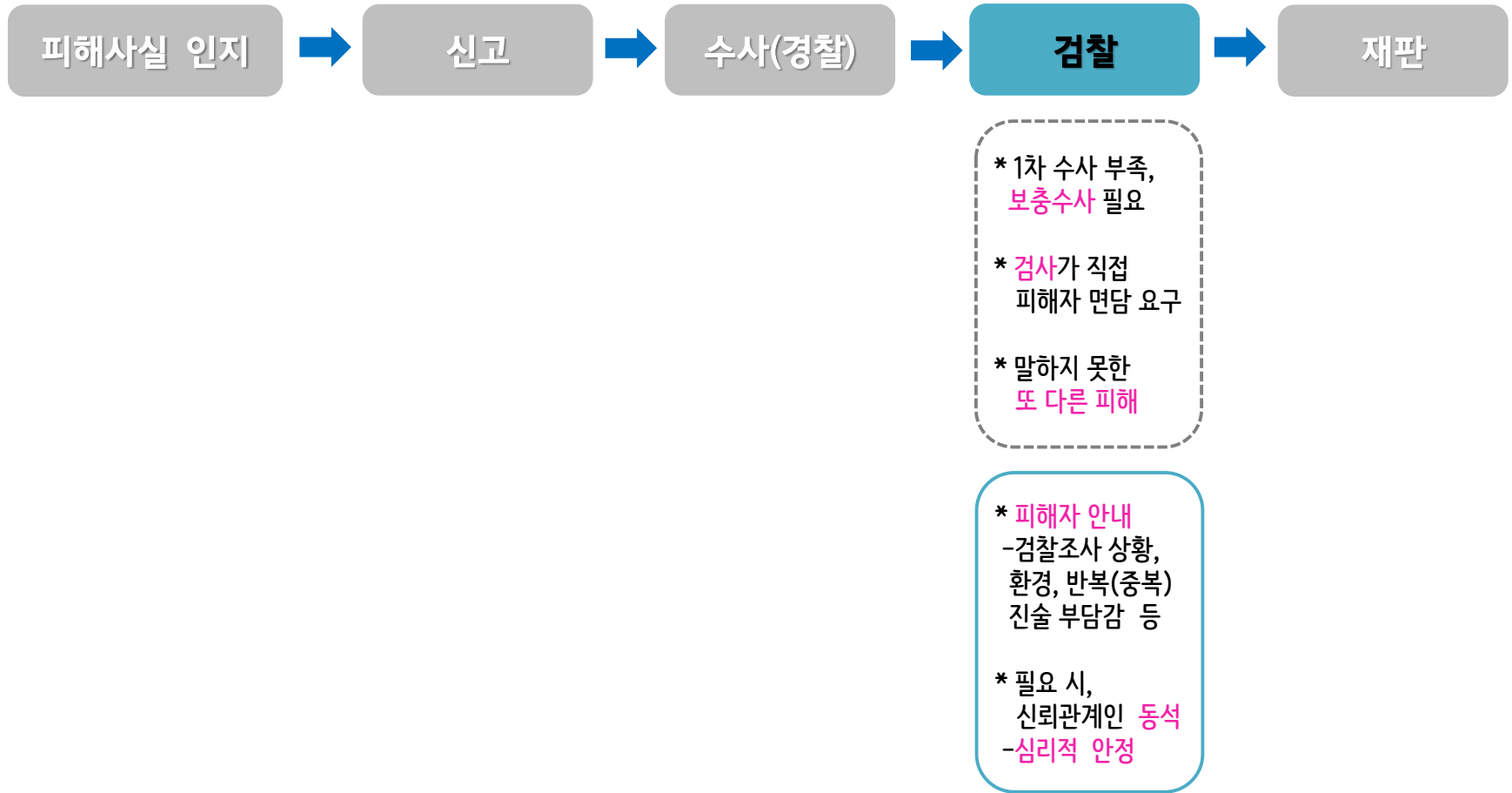


- * 피해정보 제공
 - 최초 진술
(초기 폭로 내용)
- * 피해자정보 제공
 - 장애 특성
 - 진술능력
(의사소통 수준)
 - 심리적 특성 등
- * 필요 시,
신뢰관계인 동석
 - 심리적 안정

조사 환경, 조사 기법에 따른 차이

- * 해바라기센터_ 영상녹화/유연/풍부한 경험
- * 경찰서_ 타이핑/경직/제한된 경험(장애이해↓)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 * **증인 출석 및 동행**
 - 심리적 안정
 - 증인지원관실 이용
 - 차폐막 사용 가능
- * **피해자 안내**
 - 알고 있는, 기억나는 내용만 증언



신뢰관계인 증인 출석

- * 수사 단계에서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한 경우 재판 단계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 받을 수 있음
- 증인소환장에 기재된 일시/장소에 따라 재판 출석 (본인 확인 및 증인여비지급을 위한 신분증 지참)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피해사실 인지

신고

수사(경찰)

검찰

재판

증인지원관실 이용

- * 재판 전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진술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알고 있는 내용, 기억나는 내용만 사실대로 증언)
- * 입정, 퇴정 시 가해자 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음



- * **증인 출석 및 동행**
 - 심리적 안정
 - 증인지원관실 이용
 - 차폐막** 사용 가능
- * 피해자 안내
 - 알고 있는, 기억나는 내용만 증언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 * **증인 출석 및 동행**
 - 심리적 안정
 - 증인지원관실 이용
 - 차폐막** 사용 가능
- * **피해자 안내**
 - 알고 있는, 기억나는 내용만 증언



신뢰관계인 참여

- *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 단순 동석**으로 피해자 옆자리(증인석)에 동석 불가.
 - 진술조력인이 선정된 경우 증인석에서 피해자 진술조력.
- * **비공개 재판**인 경우 신뢰관계인도 퇴장할 수 있음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 심리적 안정

■ 정보 제공

피해자_ 기관(해바라기센터, 경찰서/검찰청/법원) 소개, 만날 사람들, 진술 규칙 등

관계자_ 최초 진술, 피해자의 특성(장애 특성, 의사소통 및 정서적 특성, 진술능력 등)

■ 환경 조성

장애 유형이나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 제안
 (휠체어, 엘리베이터, 통역, 기타 진술에 도움이 되는 도구 등)

2-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_ 동석 시 유의사항

1. 조사 전, 진술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건에 대한 세세한 질문 및 이를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삼가 주세요.

2.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진술자 앞에서 (눈빛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다그치고 꾸중하거나,

꼬치꼬치 캐묻는 등의 행동은 진술자를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진술을 유도하거나 “빨리 진술을 마치고 맛있는 것을 먹자.” 는 등 보상을 약속하지 마세요.

진술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휴식시간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외부에 나가 진술자와 단독 면담하는 것은

진술오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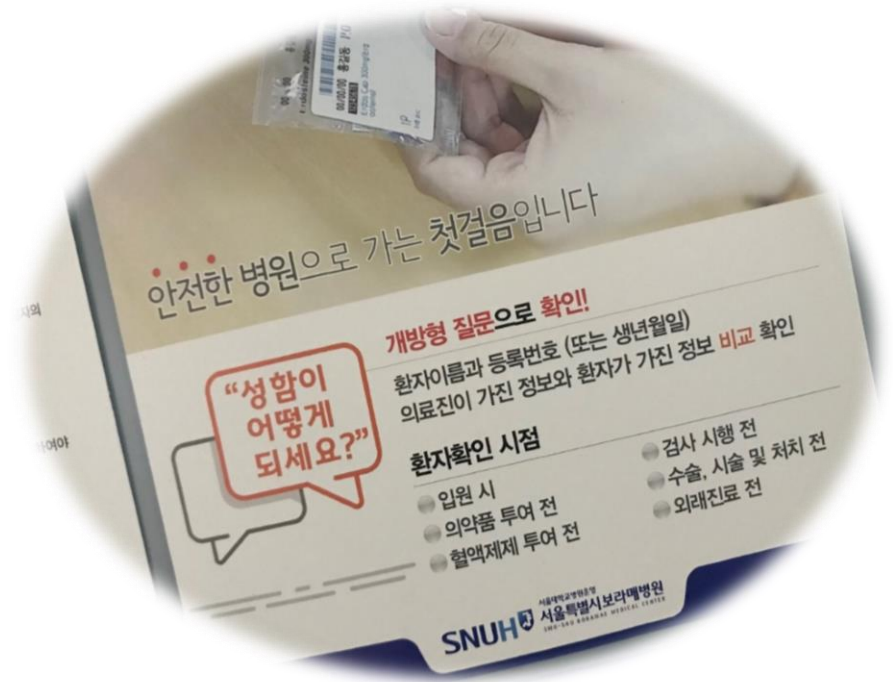
6. 진술자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원치 않는다면

진술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신뢰관계인 리플렛>

2-2.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초기 면담 방법

■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p>주말 잘 보냈어요?</p>	<p>주말에 뭐 했어요?</p>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p># 예.</p> <p>주말 잘 보냈어요?</p> <p># 아니오.</p>	<p># 어, 뭐 했더라?</p> <p># 캠핑? 아니면 드라이브?</p> <p>주말에 뭐 했어요?</p> <p># 토요일 이야기해야 하나? 일요일? 아니면 둘 다?</p> <p>#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에 있었지. 그런 너는?</p>

폐쇄형 질문 “주말 잘 보냈어요?”

개방형 질문 “주말에 뭐 했어요?”

집중도

많은 생각 + 깊은 대화

대화 주도권,
나

대화 주도권,
상대방

자유진술

속도감
(짧은 대화)

자세하고
긴 답변

이어지는 대화

2-2.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초기 면담 방법

■ 진술 규칙 3가지

- 1) 사실대로 말하기
- 2)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기
- 3) 틀린 것은 고쳐주기

■ 사전 진술 훈련

- 1) 시간 순서대로
- 2) 자세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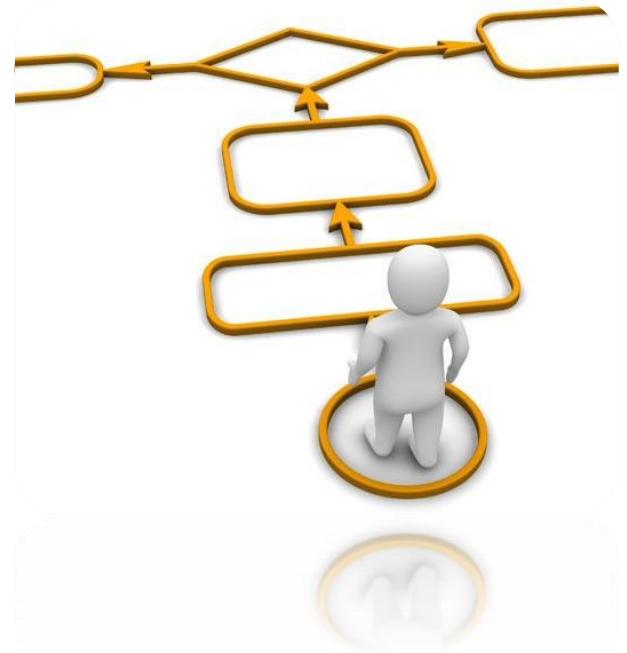
2-2.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초기 면담 방법

■ 피해 사실 확인

- * 그 일이 시작할 때 부터 끝날 때 까지 전부 말해주세요.
- * 너에게 있는 흔적/상처/멍에 대해 말해주세요.
- * 혹시 너를 힘들게/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 * (사건 장소/시간)에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 끼어들지 않기!

- * (그 것/그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해요.
- *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 * (사람/물건/행동)에 대해 좀 더 말해주세요.



2-2.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초기 면담 방법

■ 질문 방식

- * 개방형 질문
- * 권유
- * 초점화 질문(Wh 질문)
- * 조합된 개방형 질문
- * 명확화
- * 요약
- * 폐쇄형 질문(유도 질문, 암시형 질문)

2-2.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초기 면담 방법

■ 고려해야 할 점

* 폐쇄형 질문(유도 질문, 암시형 질문)

■ 마무리

1.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 지원 관련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신뢰관계인 제도

■ 마무리

2. 의사소통 지원 실제

형사사법 절차 이해 및 신뢰관계인(보호자, 옹호인)의 역할

피해사실 인지 - 신고 - 수사(경찰) - 검찰 - 재판

심리적 안정, 정보 제공, 환경 조성

동석 시 유의사항

■ 마무리

2. 의사소통 지원 실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초기 면담 방법

피해사실 확인 : 개방형 질문 + 자유진술, 자기만의 표현(언어+비언어)

사실대로 말하기,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기, 틀린 것은 고쳐주기

시간 순서대로, 자세하게

질문방식과 고려해야 할 점

고맙습니다! 😊

진솔조력인 장정은